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

[폐수배출시설]

1. 관련법령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 (법명 : 물환경보전법)
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인허가 관련

1	폐수배출시설 여부 확인 •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.01m ³ 배출하거나 •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.1m ³ 배출하는 시설 등 [시행규칙 별표4 참고]	• (폐수배출시설)법 제2조 제10호,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• (특정수질유해물질)법 제2조 제8호, 시행규칙 제4조 별표3
2	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• (대상)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	• (허가)법 제33조 제1항, 시행령 제31조 제1항 • (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)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
3	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• (대상)허가대상 이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• (신고)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 제2항
4	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(허가) 여부 • (변경전 허가·신고)폐수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,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폐수처리 방법 및 공정 변경, 시설 일부 폐쇄 • (변경후 신고) 대표자·사업장명·소재지 변경, 폐수 위탁처리업체 변경, 사업장 전부 폐쇄 등	• (변경허가)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 제3항 • (변경신고)법 제33조, 시행규칙 제38조
5	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여부 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·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조업	• 법 제37조, 시행령 제34조
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

6	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• 최종방류수 수질상태 확인(별도 수질 분석을 통해 확인)	• 법 제32조,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※ 산업·농공단지는 별도배출허용기준 확인
7	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• 방지시설 정상운영(약품투입, 처리수질확인, 슬러지처리 등) • (금지행위)비밀배출구설치 및 무단방류, 회색행위,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	• 법 제38조 제1항 제1~4호
8	측정기기 부착, 운영 • 적산전력계, 유량계 설치유무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•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확인 • (금지행위)측정기기 조작,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작성 등	• 법 제38조의2 제1항, 시행령 제35조 별표7
9	운영일지 작성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	• 법 제38조 제3항,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18~20호서식
10	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·인수시스템 입력 • 수탁처리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시 전자인계·인수시스템 (물바로 시스템)에 입력	• 법 제66조의2 제2항, 시행령 제79조의3, 시행규칙 제92조의2 별표 21의2

환경기술인

11	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항 • 환경기술인 임명 및 준수사항 준수(관련법조 참고)	• 법 제47조, 시행령 제59조 별표17
12	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• 최초교육 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• 보수교육 :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	• 법 제67조 제1항, 시행규칙 제93조

- 참고**
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9년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됨
 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 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'물환경보전법' 검색
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 [폐수배출시설]

2. 자가 체크리스트

점검일 년 월 일

점검항목	점검결과		조치 필요사항
	예	아니오	
1.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, 변경신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수배출량이 50%이상 또는 700m³/일 증가 사업장의 종류(종별)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우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기타 사항 변경(폐수배출 공정,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, 대표자, 폐수 위탁업체 및 기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)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 	□	□	
2. 배출·방지시설 운영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확인 방지시설 고장방치(기기 고장 등) 여부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확인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구입량, 재고량, 톤당 투여량 및 소모량 비교 검토 (허위기록여부) 비밀배출구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확인(폐수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확인)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최종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리상태 육안 확인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 기준 초과시 과부하 여부, 처리공법 적정성 여부 등 검토 	□	□	

점검항목	점검결과		조치 필요사항
	예	아니오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측정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TMS, 적산전력계, 유량계 고장방치 여부 등 확인 운영일지 기록·보존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여부 법정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여부 	□	□	
3.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량위탁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수 저장시설 설치(폐수 5일분 이상 보관, 폐수양 계측기(눈금 등) 부착 여부 확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 별도 저장시설 필요 없음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수탁처리계약서 작성·보관 전자인계·인수시스템을 통해 폐수위·수탁확인서 입력 매년 관할기관에 폐수위탁실적 보고 전량 재이용하는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는가 	□	□	
4.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경기술인의 종별 자격기준이 적정한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경기술인 임명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확인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격증 대여 불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를 하였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교육 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보수교육 :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	□	□	

※ 이 자료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-정보마당-부서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